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전기공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가.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등

- 1) 전기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,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「전기공사업법」이 개정(‘25.5.27)됨에 따라,
- 2) 법 시행일(‘25.11.28)에 맞춰 가입 대상(「전기공사업법」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), 기간(착공일부터 완공일) 및 금액(전기공사 계약금액) 및 방법(착공일 전까지 관련 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)을 구체화 하고, 그 외 구체적 사항은 고시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경미한 전기공사의 기준 현행화

- 1) 「전기공사업법」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해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전구, 퓨즈 교체 등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.
- 2) 그러나, 전력량계는 건물로 인입되는 전력선과 직접 연결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 위험이 높은 위험한 공사임에도 일반 국민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있는 바, 전력량계를 경미한 공사에서 제외하여 전기공사업자를 통해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

하려는 것임.

- 3) 이외에도, 전기공사기술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저압의 기준을 현행 600볼트에서 「전기사업법」과 동일하게 1,000볼트로 변경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려고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전력량계 또는 퓨즈”를 “퓨즈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“600볼트”를 “1,000볼트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) ① 법 제22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, 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입 대상 :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전기공사
2. 가입 기간 :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
3. 가입 금액 : 전기공사의 계약금액

②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, 종류,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경미한 전기공사 등)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 사”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 한다.	제5조(경미한 전기공사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</u> 하거나 떼어내는 공사	3. <u>퓨즈</u> ----- -----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전압이 <u>600볼트</u> 이하이고, 전 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 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 선 및 보수 공사. 다만, 전기공 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.	5. ---- <u>1,000볼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2(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 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) ① 법 제2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의 가입 대상, 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가입 대상 :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도급계약을 체결해야

하는 전기공사

2. 가입 기간 : 전기공사의 착공
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

3. 가입 금액 : 전기공사의 계약
금액

②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
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
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
한다.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
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
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, 종류,
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
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253